

반복참여 제한 안내문

-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,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(단, 65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은 예외)하고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(1년 미만 참여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 제공)(65세 이상 고령자, 취업지원대상자 등도 예외 없이 후순위 적용)
 -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,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,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근무일수 및 주말·공휴일·병가일 등을 모두 합산하여 참여일수 계산
 -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, 공공기관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를 합산
-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(온·오프라인)을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 결과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기회 부여
 - ※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는 아래 참조 내용(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) 참조
-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 존재
 -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,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

참고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

※ 현재 각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으로, 아래 제시한 정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

1 국민취업지원제도(고용노동부)

- (개요)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신규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
- (지원요건) “연령” · “소득” · “재산” · “취업경험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I ·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

〈유형별 지원요건〉

구분		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
I 유형	요건심사형 *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		15~69세	중위소득 60% ↓	4억원 이하 (청년: 5억원 이하)	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이상
	선발형 *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	비경활	15~69세	중위소득 60% ↓	4억원 이하	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미만
		청년	18~34세	중위소득 120% ↓	5억원 이하	무관
II 유형			15~69세	중위소득 100% ↓ (청년: 소득 무관)	무관	무관

- (지원내용)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에 따라 ①직업훈련·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②구직촉진수당(월50만×6개월) 등 지급

취업지원 (I·II유형 공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별 역량·의지에 따른 직업훈련·일경험·복지 프로그램 연계*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* (취업지원)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연계 (구직활동지원) 동행면접, 이력서·면접 컨설팅, 일자리정보 제공, 채용박람회, 취업알선 등 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부여 → 미 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		
	소득지원 (I 유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구직촉진수당(월50~90만원×6개월) 지원 *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)는 지원 제외, 직 접알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	<div>취업활동비 지원 (II유형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(최대 195.4만원) 지원

- (신청방법)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

② 청년도전지원사업(고용노동부)

- (사업목적)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,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(도전, 도전+)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- (지원내용)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,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, 국민취업지원제도·일경험·직업훈련 등 연계

【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】

구분	맞춤형 프로그램 구성	지원기간
도전	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 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	단기 : 5주 이상
도전+	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,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 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	중기 : 15주 이상 장기 : 25주 이상

- 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(6개월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미참여,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기준 21점 이상인 만18세 이상~34세 이하 청년)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지역특화청년
- (신청방법) 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index.do

③ 중장년내일센터(고용노동부)

- (개요) 40대 이상 재직자·퇴직(예정)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, 전직 및 재취업지원,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
- (지원내용) 생애경력설계, 전직 및 재취업지원, 특화서비스, 사업주지원패키지 등
 - (생애경력설계) 참여자의 연령, 취업 여부, 종사업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역량,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등
 - (전직 및 재취업지원) 중장년내일센터 및 고용복지+센터 내 「중장년 전담창구」에서 중장년 유형에 따라 전직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
 - (산업별·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) 지자체, 산업별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또는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
 - (사업주지원패키지) 일자리 컨설팅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, 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
- (지원대상) 40세 이상의 재직(퇴직예정)자, 구직자 및 사업주
- (신청방법) 온라인 www.work.go.kr/senior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중장년내일센터 및 고용복지+센터 내 「중장년 전담창구」(문의 ☎ 1350)

④ 여성새로일하기센터(고용노동부·성평등가족부)

- (개요)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, 구인 · 구직관리, 직업교육, 인턴십, 취 ·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- (지원내용) 취업상담 · 알선, 전문기술, 기업맞춤훈련 등 직무훈련, 온라인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(지원대상) 임신 · 육아 ·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상태이며,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
- (신청방법) 온라인 saeil.mogef.go.kr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(문의 ☎ 1544-1199)

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(한국장애인고용공단)

- (개요) 장애인에게 장애인 특화 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여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확대
- (지원내용)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

- (1단계 취업지원 상담) 심층상담을 통한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참여수당 지급(최대 15만원)
- (2단계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)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훈련지원 및 훈련수당 지급 (월 284천원, 최대 12개월) * 공단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은 최대 24개월
- (3단계 취업 후 고용유지) 취업 유지기간(3,6,12개월)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지급(최대 150만원)
- (구직활동 독려 지원)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구직 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(월 50만원, 최대 6개월)

- (지원대상) 만 18세이상 구직 장애인
- (신청방법)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문의 ☎ 1588-1519)

참고 2

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사항 준수

근로 조건 준수

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준수

참여자 현황 관리

- ❖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,
 -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의무 주체가 되며
 -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로서 사망재해 등 중대산업재해* 발생 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이 필요

중대산업재해란? (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,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,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

1)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조치사항

- ☐ (안전보건관리체제)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*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(법 제2장)
 - *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산업보건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(법 제15조~제24조)
- ☐ (안전보건교육)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별 유해위험 내용, 대처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함(법 제29조)
- ☐ (법령요지 등의 게시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(법 제34조)
- ☐ (위험성평가) 각 작업별 어떤 유해위험이 있고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법 제36조)
- ☐ (안전조치) 사업주는 기계·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,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(법 제38조)*

*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

- (보건조치) 사업주는 환기·채광·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(법 제39조)*

*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

- (중대재해 발생보고)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(법 제54조)

- (산업재해 발생보고)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(법 제57조)

* (산업재해) ①사망자,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발생

2)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와 조치사항

- (안전·보건 확보의무)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(법 제4조)

* 1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, 2.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,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·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,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

- 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)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핵심 규정

1.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2.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3.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4.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5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6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7.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8.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9.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,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